

등록규정

제·개정연혁

- 1971. 2. 11. 개정
- 1971. 12. 30. 개정
- 1975. 3. 26. 개정
- 1979. 12. 16. 개정
- 1982. 4. 15. 개정
- 1983. 2. 17. 개정
- 1983. 11. 15. 개정
- 1984. 3. 3. 개정
- 1984. 11. 23. 개정
- 1985. 12. 2. 개정
- 1987. 11. 5. 개정
- 1988. 3. 12. 개정
- 1989. 12. 26. 개정
- 1992. 12. 28. 개정
- 1998. 4. 22. 개정
- 2002. 1. 24. 개정
- 2002. 7. 2. 개정
- 2003. 5. 19. 개정
- 2004. 9. 17. 개정
- 2005. 2. 14. 개정
- 2006. 3. 30. 개정
- 2007. 3. 30. 개정
- 2010. 1. 14. 개정
- 2010. 9. 30. 개정
- 2011. 1. 17. 개정
- 2011. 7. 5. 개정
- 2011. 10. 18. 개정
- 2012. 1. 13. 개정
- 2012. 4. 17. 개정
- 2013. 8. 19. 개정
- 2014. 8. 28. 개정
- 2014. 12. 10. 개정
- 2015. 11. 12. 개정
- 2016. 12. 20. 개정
- 2017. 1. 16. 개정
- 2017. 12. 26. 개정
- 2018. 2. 28. 개정
- 2018. 10. 12. 개정
- 2019. 6. 11. 개정
- 2019. 12. 19. 개정

용어의 정의

가나다순

가등록(임시등록) : 협회 회원 자격을 충족하고 등록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협회의 최종 승인시 회원의 지위 부여가 가능

경기 출전 : 등록된 선수가 선발 또는 교체로 경기에 출전한 경우

국제이적확인서 : 국제이적을 위하여 기존 소속의 국가협회가 새로운 소속 국가협회에 발급해주는 확인서

국제이적 : 선수가 다른 국가협회의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하는 것

단체 : 학교,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대회 : 협회가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한 축구 대회

리그 : 협회가 국내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승인한 리그 방식의 축구 대회

등록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팀·선수·지도자·임원이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회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협회가 인정한 경기·대회·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상태

등록기간 : 등록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기

등록매니저 : 협회·시도협회·팀에서 회원의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협회·시도협회의 승인 또는 교육 등 자격을 갖춘 자

미등록 : 기존 소속팀에 등록된 선수가 등록효력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어느 팀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기존 소속팀으로 소속이 남아 있는 상태) 또는 기존 소속팀에서 선수가 탈퇴 되었지만 그 이후 어느 팀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팀의 미등록이란 등록승인을 받고 활동한 기존팀이 당해연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비 활동팀의 재등록 : 직전년도에 미등록한 팀이 다시 당해연도 활동 자격을 득하는 과정

선수 : 회원의 자격을 충족하고 축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시도협회 : 협회 정관 제10조 및 제11조의 회원단체

유급 : 초·중·고 선수가 협회에서 인정한 사유로 상위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전년도 연령대에 재등록한 상태(제14조)

육성지원금 : 유소년 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 신인 선수 등록시 구단에서 각 팀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제22조 및 별지4)

이적 : 선수가 다른 팀으로 그 소속팀을 변경하는 것

이적 출전 제한: 선수의 이적으로 인하여 협회가 인정한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는 기간이며 적용예시는 아래와 같음

1. 전문 U18 선수의 동일시도 및 타시도 이적(3개월 출전제한)에 따른 출전가능일 (제37조 참조)

| 전 소속팀에서의 최종 출전일 | 출전가능일 |
|-----------------|-------------|
| 2019. 2. 1. | 2019. 5. 2. |

단,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성인선수의 전문에서 동호인 팀으로 이적(6개월 출전제한) 또는 동호인에서 동호인 팀으로 이적(6개월 출전제한)에 따른 출전가능일 (제45조, 제47조 참조)

| 이적 신청일 또는 전소속팀 탈퇴일 중 빠른 날짜 | 출전가능일 |
|----------------------------|-------------|
| 2019. 2. 1. | 2019. 8. 1. |

임원 : 팀, 선수, 지도자 이외의 회원

조인케이에프에이(joinkfa.com) : 선수·지도자·팀·임원의 등록·이적·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의 투명성과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웹 기반 데이터 정보 시스템

중개인: 만 19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선수 또는 구단의 위임을 받아 선수고용계약 또는 이적계약 등을 위해 중개 또는 협상을 하는 자 (중개인 관리 규정에 따름)

지도자 : 회원의 자격(자격증·등록)을 충족하여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자

탈퇴 : 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탈퇴 승인을 득하여 더 이상 해당 팀의 소속이 아닌 상태

팀 창단 : 협회 또는 산하단체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사무국에 신청하여 팀 구성을 승인받는 것

팀 해체 : 기존 등록팀이 정기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 공시된 상태

팀 : 회원의 자격을 충족한 선수·지도자·임원을 구성하여 축구 활동에 참가하는 집합적 단위

협회 : 대한축구협회

회원 : 협회가 정한 자격을 충족하고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 축구 활동을 하는 자로 선수, 팀, 지도자, 임원으로 구분된다.

회원 등록비(이하 '회비') :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팀·선수가 해당 시도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FIFA TMS : 프로 자격 선수와 아마추어 자격 선수(해외→국내)의 국제 이적시 관련 협회와 팀이 사용하는 FIFA 웹 기반 데이터 정보 시스템 (11인제 적용)

KFA 등록증 : 등록한 선수·지도자·임원에게 발급되는 등록증

미소속 : 당해연도 등록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태

전문 축구 선수 :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또는 하고자 하는 자

동호인 축구 선수 : 축구를 개인의 건강증진과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2장 11조(가입 및 등록)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은 팀과 선수 등록에 관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등록)

- ① 선수는 하나의 팀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단, 동호인부 성인팀에 한하여 시도, 시군구 선 발팀의 대회 출전은 가능하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3에 기재된 절차와 내용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 ③ 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된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된다.
- ④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전문축구)는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의 효력 발생과 상실)

- ① 등록의 효력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또는 다음 해 2월 내 등록하는 회원의 경우 다음 해 등록 승인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
 1. 팀의 해체에 따른 등록 해지 요청을 협회가 승인한 경우(단, 팀에 대한 분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회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2. 등록한 (전문축구)팀이 당해연도 협회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대회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다음 해 등록할 수 없다)
 3. 협회가 팀의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경우
- ③ 기존 등록(전문 축구)팀이 정기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 마감 이후 15일 이내에 협회는 팀의 해체를 공시한다.

제5조 (대회 참가)

등록 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

제2장 팀 등록

제6조 (등록 팀 구분)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팀을 구분한다

| 구분 | 전문 축구 | | 동호인 축구 |
|-------------|-------------------------|------------------|-------------------|
| | 남자 | 여자 | |
| 유청소년 | U12팀 | U12팀 | U12팀 |
| | U15팀 | U15팀 | U15팀 |
| | U18팀 | U18팀 | U18팀 |
| 성인 (O19) | 대학팀 (U리그 팀 등) | 대학팀 | 대학팀 |
| | 일반팀 (K3리그팀, K4리그팀 등) | 일반팀 (WK리그팀 등) | 일반팀 여성팀 직장팀 |
| | 프로팀 (K리그1팀, K리그2팀) | | |

※ 전문 U12팀의 경우 남자팀에 여자 선수 등록 가능하고, 동호인축구팀의 경우 성별 구별 없이 등록 가능하다. 동호인축구 유청소년 여자팀은 하위 연령의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② 팀명 등록시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

1. 클럽팀은 학교명을 사용할 수 없다. (괄호 등 기타 형식 포함)
2. 등록된 팀명과 해체된 과거 팀명 등은 사용할 수 없다.
3. 영문은 대문자만 사용한다.
4. 특수문자 및 부호(괄호, 점 등)는 생략한다.
5. 팀명은 공백 없이 모두 붙여 쓴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 (전문 축구 팀 등록 승인)

①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팀 대표자(미성년자 제외)
2.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협회 인증 해당 급 지도자 (감독) 1인 이상
3. 본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학교팀이 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 및 지침에 따른다.)
4. 선수 등록 최소 인원

| (팀)구분 | 남 | 여 |
|----------|-------|-------|
| U12 | 10명이상 | 10명이상 |
| U15 | 16명이상 | 14명이상 |
| U18 | 18명이상 | 14명이상 |
| O19(성인팀) | 18명이상 | 18명이상 |

5. 회원 등록비 (별지 2)

- ② 팀 등록시 팀 대표자, 단장(체육부장), 트레이너, 의무(닥터, 재활트레이너), 스카우트, 행정, 통역 등 임원 등록이 가능하며, 별지3에 명시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③ 하나의 단체는 (팀)구분 별 한개팀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④ 협회는 필요시 추가로 등록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등록된 팀이 ①항의 등록 요건을 다음 (추가)등록 기간(최대 60일)까지 유지하지 못한 경우 협회는 팀의 해체와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신규팀의 등록 시기와 비 활동 팀의 재등록 시기는 매년 5월 말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해당 팀은 당해연도 1회 이상 협회가 승인하거나 인정한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 (동호인 축구팀 등록 승인)

- ①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다음 각 호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1. 단체장(미성년자 제외)
 - 2. 만 19세 이상 성인 지도자 1인 이상
 - 3. 결격 사유가 없는 선수
 - 가. U12·U15·U18 : 인원 제한 없음
 - 나. 성인(O19) : 11명 이상
 - 4. 회원 등록비(별지2)
- ② 등록하고자 하는 팀은 시군구협회 등록 신청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③ 팀 등록시 대표, 단장, 회장등 임원 등록이 가능하며, 별지3에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④ 협회는 필요시 추가로 등록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등록 승인을 받은 팀이 상기 등록 승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협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팀의 등록 시기는 직전연도에 시도협회가 요청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전문 축구 선수 등록

제9조(선수의 등록 승인)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공정분과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하여 협회의 추가 확인 요청시, 선수는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선수의 등록이 추후 발견되었을 시 해당자는 공정분과위원회에 회부된다.
- ④ 외국 국적자가 선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서류를 제출한 후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협회는 필요시 별지 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선수 등록 시 서약서(개인정보 동의 및 승부조작 방지 등)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협회 온라인 시스템(Joinkf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⑥ 협회는 선수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디어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3자 등에 제공하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⑦ 등록 절차를 마친 선수가 등록 이후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 ⑧ 별지2의 회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절 U12·U15·U18선수의 등록

제10조 (등록 원칙)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해당 시도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 시기)

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5월, 7월, 8월, 9월 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5월은 2주 이내, 7월은 4주 이내, 8월 및 9월은 각 2주 이내로 정함)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 가. 초·중·고 신규 등록 선수에 한하여 매월 초 기준 협회 근무일 3일간 등록할 수 있다.
 - 나. 팀 해체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다.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라.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마. 선수가 국제이적 및 분쟁 조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신청을 허용한다.

제12조 (선수의 연령 제한)

- ① U-12는 만 12세 이하, U-15는 만 15세 이하, U-18은 만 18세 이하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령의 기준은 출생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유급 선수 및 연령 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①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12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협회에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최초 입학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유급자의 동일 연령 재등록)

- ① 유급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②항의 유급에 따른 등록 승인 사유에 해당하는 유급자 또는 재수한 자
 2. 유급 및 재수의 횟수는 선수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한다.
- ② 유급에 따른 등록 승인 사유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
 - 가정 빈곤 등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유급한 자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 부상·질병으로 인해 국·공립 종합병원 및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일은 유급 희망년도 8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치료 기간 중 대회에 출전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 가. 72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그 증빙을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나.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병명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6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조기 입학으로 인한 유급

초등학교에 조기(만 7세 이전) 입학한 자

4. 해외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유급

부모의 이민, 부모의 근무지 변경, 부모의 학업 및 기타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사유로 부모와 동반하여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후 18개월 이상 해당 국가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후 다시 국내 학교로 입학 시 유급한 자. 다만, 국내에 방문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해외 해당 국가에서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본다.

③ 제출 서류

1. 가정 사유로 인한 유급자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 유급확인서 또는 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서

2. 질병으로 인한 유급

진단서(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승인 종합병원에서 발행) 및 제14조 2항에 근거한 치료 증빙서(진료기록부), 생활기록부 사본, 학교장 유급확인서 또는 사유서, 시도 축구협회 유급승인 요청서

3. 조기 입학으로 인한 유급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최초 입학 기록 확인), 유급한 급의 생활기록부, 학교장 유급확인서, 시도 축구협회 유급 승인 요청서

4. 해외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유급

부모와 선수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와 선수의 거주지 사실증명서, 해외 현지에서의 부모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이민허가서류 또는 부모의 해외 체류와 관련된 비자(이민, 취업, 유학 등), 해외 현지에서의 선수 재학증명서(공인된 학교) 또는 성적증명서(한국어 번역 공증), 선수의 국내 생활기록부 사본, 선수의 국내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④ 서류 제출

유급하고자 하는 선수는 제14조 3항에 명시한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 명의의 서류를 시도협회에 제출하고 시도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

⑤ 경기 출전 제한

1. 유급 선수로 등록한 자는 유급 연도에 최종출전한 경기일로부터 만 1년동안 출전이 제한된다.
2. 팀은 연령초과자를 2명까지 대회(리그)에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U18(고등)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U18(고)선수의 계약 및 성인리그 출전에 관한 사항은 별지6을 준용한다.

제2절 대학부 선수의 등록

제16조 (등록원칙)

총·학장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한다.

제17조 (등록 시기)

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5월, 7월, 9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가. 팀 해체, 군복무(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라. 선수가 국제이적 및 분쟁 조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신청을 허용한다.

제18조 (등록 금지 조항)

- ① 해당 대학 학제에서 허용하는 총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최대 8학기까지 등록 가능)
- ② 교육부 인가 학과 및 학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하며, 승인후 대학선수의 학기를 적용한다.
 1. 4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8학기
 2. 3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6학기
 3. 2년제 대학(학과) 재학 선수 : 4학기
- ③ 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④ 휴학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 ⑤ 군복무 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단, 병역 면제 특례자로서 입소하여 소집 교육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⑥ 각기 다른 대학을 혼합하여 등록하거나, 동일 재단의 다른 학교를 혼합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3절 K리그1, K리그2(프로선수)의 등록

제20조 (등록 시기)

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하되, 12주를 초과할 수 없다.
2. 추가 등록은 연맹이 지정하고 협회가 승인한 기간에 실시하되, 4주 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조항
 -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복무(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문서 접수후 등록한다. 단, 병역복무 복귀 선수의 등록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중복되어 1일전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공휴일 전 업무일까지 등록 신청을 통한 가등록후, 전역증 제출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다.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라. 선수가 국제이적 및 분쟁 조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신청을 허용한다.

제21조 (등록 절차)

- ① 협회의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의 별도 운영 안내에 따른다.
- ② 프로축구연맹의 각 규정의 따른 제출 서류는 프로축구연맹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③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프로축구연맹을 통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 (신인 선수의 등록)

- ① 선수는 이적확인서를 입단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② 해당 구단은 선수의 이적확인서 사본 1부를 등록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③ 해당 구단은 프로 신인선수 육성지원금 지침(별지4)에 따라 각 아마추어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개인 관련 조항)

선수가 구단과 계약할 때는 중개인의 협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서상에 반드시 중개인의 사용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2. 중개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수와 중개인 간의 대리인 계약서를 해당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3.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이 대리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선수나 팀이 등록하지 않은 중개인을 사용하여 계약한 것이 드러날 경우 협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5. 본 조항은 WK리그, K3리그, K4리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4절 WK의 등록

제24조 (등록 원칙)

- ①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한다.
- ② 해당 연맹의 각 규정에 따라 구단과 계약한 선수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계약일부터 경기에 출전이 가능하다.
- ③ 여자 일반팀의 등록 및 절차는 WK리그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5조 (등록 시기)

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7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 가. 팀 해체, 군복무(90일 이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다.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
 - 라. 선수가 국제이적 및 분쟁 조정등의 사유로 등록을 요청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및 대회(리그) 참가신청을 허용한다.

제26조 (등록 절차)

협회의 온라인시스템(joinkfa.com)의 별도 운영 안내에 따른다.

제27조 (신인 선수의 등록)

선수는 이적확인서를 입단 희망팀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5절 K3 및 K4 의 등록

제28조 (등록 원칙)

- ① 대표자 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한다.
- ② K3리그, K4리그의 각 규정에 따라 선수 등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등록 시기)

등록은 정기 등록과 추가 등록으로 구분된다.

1. 정기 등록은 매년 1월부터 3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2. 추가 등록은 7월중 협회가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3.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4. 예외 조항
 - 가. 팀 창단 또는 해체, 군복무(전역 당해연도내 요청시) 등의 사유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수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시도협회를 통해 문서 접수 후 등록한다.
 - 나. 등록 기간 중에 개최되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회규정 등 협회가 지정하는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한다.
 - 다. 지도자를 포함한 임원은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해당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4장 동호인 축구 선수 등록

제30조 (선수의 등록 승인)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1. 협회 공정분과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상기 ①항과 관련하여 협회의 추가 확인 요청시, 선수는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상기 ①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선수의 등록이 추후 발견되었을 시 해당자는 공정분과위원회에 회부된다.

- ④ 외국 국적자가 선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1의 서류를 제출한 후 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협회는 필요시 별지 외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선수 등록 시 서약서(개인정보 동의 및 승부조작 방지 등)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협회 온라인 시스템(Joinkf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⑥ 협회는 선수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디어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3자 등에게 제공하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⑦ 등록 절차를 마친 선수가 등록 이후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 ⑧ 별지2의 회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등록 원칙)

단체장(클럽 대표자)명의로 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해당 시군구협회와 시도협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2조 (등록 시기)

각 시도협회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실시한다. 단,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협회 휴무일은 제외된다.

제33조 (선수의 연령 구분)

- ① 선수의 연령은 출생 연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령의 기준은 출생년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각 출생 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는 동일연령으로 간주한다.)
- ② 유소년(U12·U15·U18) 연령 초과 선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시도협회가 최종 승인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전문 선수로 이적하고자 하는 연령 초과자는 제14조에 따라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장 지도자 등록

제34조 (지도자 등록)

- ① 지도자의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은 대한축구협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지도자는 본 규정 제35조 지도자 등록 기준이 적용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전문 축구팀의 지도자는 전문 축구팀내 2개 이상의 팀에 중복 등록이 불가하며 동호인 축구팀에 중복 등록은 가능하다.

2. 협회 공정분과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축구관련 비리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9.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협회의 추가 확인 요청시, 지도자는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상기 ②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등록이 추후 발견되었을 시 해당자는 공정분과위원회에 회부된다.
 - ⑤ 협회는 지도자 등록시 서약서(개인정보 동의 및 승부조작 방지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협회는 지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해야 하며, 이를 미디어와 대회 운영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⑦ 등록 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등록금지,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35조 (지도자 등록 기준)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급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 ① 전문 축구 팀의 지도자 등록 기준

| 등록구분 | 적용연도 | 지도자 (감독) | 지도자 (코치) | GK코치 | 피지컬 코치 |
|--------------|------|----------------|----------------|---------|------------------------|
| U12 | 2019 | AFC C급(KFA 3급) | KFA D급(4급) | GK Lv 1 | 피트니스 Lv1 (2022부터적용) |
| U15 U18 | 2019 | AFC B급(KFA 2급) | AFC C급(KFA 3급) | GK Lv 1 | 피트니스Lv1 (2022부터적용) |
| 대학 성인 | 2019 | AFC A급(KFA 1급) | AFC B급(KFA 2급) | GK Lv 2 | 피트니스 Lv2 (2022부터적용) |
| K리그1 K리그2 | 2020 | AFC P급(KFA P급) | AFC A급(KFA 1급) | GK Lv 3 | 피트니스 Lv2 (2022부터적용) |
| | | | | | 피트니스 Lv3 (2027부터적용) |

1. 팀은 감독에 해당하는 급의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동호인 축구팀의 지도자 등록 기준 : 만 19세 이상 (단, 대회 참가 자격은 해당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6장 국내 이적

제1절 전문 축구팀 간 이적

제36조 (U12·U15·U18 선수의 이적)

- ① 당해연도 U12·U15·U18 선수의 이적은 등록기간 내 연간 2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제55조 ②항에 따라 선수위원회가 선수 구제 의결을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동일 또는 타 시도협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과 해당 시도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③ 최종 소속팀의 탈퇴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이적 요청 7일 경과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⑤ 지도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U12·U15·U18 선수 활동의 개시)

- ① 각종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이적 출전 제한
 1. U12, U15 선수의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2. U18 선수가 이적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2023년 1월 1일부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본 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적한 선수의 경우에도 본 항의 적용을 받는다.
- ② 이적 출전 제한에 적용되는 기준
 1. 선수가 최종 참가한 경기 다음날을 기준으로 출전 제한기간을 계산한다.
 2. 최초 등록 후 경기출전 없이 이적할 경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출전 제한기간을 계산한다.
- ③ 해외 유학 선수의 재등록시 원 소속 팀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재학 중이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 ④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진학으로 인한 이적의 경우
 2. 팀의 해체로 인한 이적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3. 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신규 선수의 경우
 4. 제55조 ②항에 따라 선수위원회가 선수 구제 의결을 한 경우
- ⑤ 선수의 활동 개시시기를 대회 규정으로 별도 공지할 수 있다.

제38조 (대학부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이적시에는 소속팀 총·학장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② 이적 요청 7일 경과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③ 지도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④ 선수의 학기 중 이적은 불가하며, 연 1회 이적 등록이 가능하다.

제39조 (K리그1/K리그2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프로선수의 대학 이적은 프로구단의 확인이 필요하고 남은 학사과정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며, 졸업 후 원 소속팀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 ② 프로팀간의 이적은 연맹 선수 규정에 준한다.

제40조 (K3/K4/WK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선수는 계약기간 내 이적시 소속팀 단체장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②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클럽과 선수간 양자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선수는 자유계약 선수로 이적이 가능하다.
- ③ 선수의 대학 이적은 입학 및 편입학 등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④ 이적 요청 7일 경과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제2절 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제41조 (U12·U15·U18 클럽 선수의 이적)

- 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과 소속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단, 동일 시군구협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에 시도협회의 이적확인 없이 이적 할 수 있다.
- ② 최종 소속팀의 탈퇴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이적 요청 7일 경과 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2조 (U12·U15·U18 클럽 선수의 활동의 개시)

동호인 축구 팀 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출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3조 (성인팀 이적 선수의 등록)

- ①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경우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과 소속 시군구협회 및 시도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단, 동일 시군구협회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 에 시도협회의 이적확인 없이 이적할 수 있다.
- ② 최종 소속팀의 탈퇴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의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 이적 요청 7일 경과 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4조 (성인팀 선수의 활동의 개시)

- ① 동호인 축구 내 타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전을 제한한다. 단, 대회(리그) 규정에서 출전 자격을 명시할 경우 해당 대회(리그)의 규정을 따른다.
- ② 해체된 팀에서 이적한 선수는 협회가 팀의 해체를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출전이 가능하다.

제3절 전문 축구-동호인 축구팀 간 이적 등록

제45조 (전문 축구-동호인 축구 간 이적)

- ①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의 선수 이적은 당해연도 연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 축구팀으로의 당해연도 선수 이적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서와 소속 시군구협회와 시도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③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소속팀 단체장(학교장 또는 클럽 대표자)의 이적확인서와 소속 시도협회의 이적확인이 필요하다.
- ④ 최종 소속팀의 탈퇴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여 새로 등록하는 선수는 이적 확인이 없어도 등록을 할 수 있다.
- ⑤ 이적 요청 7일 경과 후 응답이 없는 경우는 확인된 것으로 진행된다.
- ⑥ 지도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수의 이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전문축구팀과 동호인축구팀 간 이적 선수의 활동의 개시)

- ① 성인 선수가 동호인 축구팀에서 전문 축구팀으로 이적할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유소년 선수(U-18세 이하)가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③ 성인 선수가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경우 전 소속팀 탈퇴일 또는 이적 신청일로부터 6개월까지 출전을 제한한다. 단, 대회(리그) 규정에서 출전 자격을 명시할 경우 해당 대회(리그)의 규정을 따른다.
- ④ ③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축구팀에서 동호인 축구팀으로 이적한 성인 선수가 전문 축구팀 최종 출전일로부터 30개월이 초과되었을 경우 이적 출전 제한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제7장 국제 이적

제47조 (국제이적 선수의 등록 원칙)

- ①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은 FIFA가 인정하는 국제이적확인서(ITC, International Transfer Certificate)가 다른 국가 협회로부터 협회에 전달된 후에 가능하다. 단, 만 10세 미만 선수의 경우 국제이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국제이적 선수 중 외국 국적자를 협회에 등록하려는 팀은 별지1(외국 국적자 선수 등록 시 제출 서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만 18세 미만의 선수의 국제 이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 승인에 관한 절차는 FIFA 선수자격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8조 (국제이적 확인서의 요청)

- ① 해외협회에 등록이 된 선수가 국내 팀에 등록하고자 할 때, 협회가 지정한 등록기간 내에 해당팀은 선수에 대한 국제이적확인서 발급 요청을 협회에 해야 한다.
- ② 협회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국가 협회로부터 국제이적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다.

제49조 (국제이적 선수 등록의 유효)

- ① 국제 이적 선수의 등록은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 협회가 발급한 국제이적확인서를 협회가 수신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국제이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협회가 정한 등록 마감일 업무 종료 시각까지이며, 국제이적확인서가 등록기간이 지나서 수신되더라도 수신일을 기점으로 등록이 유효하다.
- ③ 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FIFA TMS를 통한 프로선수의 이적의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 협회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를 임시등록 할 수 있다.
- ④ 임시등록 후 1년 이내에 해당 선수가 소속되었던 국가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밝히고 FIFA가 최종적으로 승인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협회의 등록은 취소된다.
- ⑤ 협회가 국제이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국가협회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 협회는 해당 선수를 정식등록 할 수 있다.
- ⑥ 해외로 이적한 선수가 다시 국내 팀으로 이적할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한 이적 출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50조 (탈퇴, 계약 만료 또는 활동 종료 선수의 국제 이적)

- ① 해외협회에서 선수를 등록하기 위하여 국제이적확인서 발급 요청을 협회에 할 경우, 협회는 선수가 등록된 국내팀에 이적 확인을 요청하고 협회에서 최종 확인 후 국제이적확인서를 해외협회에 발급한다.
- ② 시도협회가 이미 승인한 탈퇴 선수의 국제 이적은 이전 소속팀의 이적 확인 없이 협회가 바로 국제이적확인서를 해당협회로 발급한다.
- ③ 프로선수로서 소속팀과의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선수, 또는 아마추어 선수로서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개월이 지난 선수는 FIFA의 규정에 따라 이전 소속팀의 이적 확인 없이도 국제 이적이 가능하다.
- ④ 위 ③항의 활동 종료 기간은 선수가 이전 소속팀의 공식 경기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날로부터 산정한다.
- ⑤ 위 ①항에 따라 협회는 다른 국가 협회와 국제 이적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제8장 등록 내용 변경 및 부당 등록

제51조 (등록 기재 내용의 수정)

등록 및 이적 기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팀은 등록 기간 내에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협회가 근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팀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52조 (부당등록의 정의)

부당등록이란 선수나 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주체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이적, 탈퇴 등)되었거나 이중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제53조 (부당등록의 시정)

위 제53조의 부당등록의 경우 발견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후 확인을 거쳐 해당 단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9장 선수 자격 심의 및 선수위원회 관련 사항

제54조 (선수위원회 구성)

팀/선수의 등록 및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선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제55조 (선수 구제)

- ① 부당한 이적확인 거부 등 선수 구제와 관련된 사항 발생 시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② 선수위원회는 지도자의 폭력, 성폭력 등 선수위원회가 인정한 선수 권익 침해 사유로 신청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선수위원회가 선수 구제를 의결한 경우 해당 선수는 본 규정에서 정한 선수의 이적 횟수 제한 및 이적 출전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56조 (징계)

등록과 관련된 징계 사유 또는 분쟁 등이 발생 시 협회는 선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공정위원회의 규정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5. 2. 14.)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05년 2월 14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허가받지 않은 등록 업무의 금지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어떠한 개인, 단체도 선수 등록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 (2) 위 1항을 위반하여 선수 등록에 관여할 경우 본회는 해당자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3.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10. 1. 14.)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32조 (이적 선수의 등록) ③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제5조 (지도자의 등록) ②항 1호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30.)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0년 9월 30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1. 17.)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1년 1월 17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7. 5.)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1년 7월 5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1. 10. 18.)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2012. 1. 13.)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 중 개정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8. 20.)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8.)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0.)

제1조 (시행일)

- ① 본 규정중 개정된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득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 칙(2016. 12. 2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 1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28.)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 중 변경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U-12, U-15팀)는 본 규정 시행일부터 2021년도 등록까지 제7조 ③항의 개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두 개 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2022년도 등록부터 제7조 ③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6. 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부 칙(2019. 12. 19.)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 제37조 ①항과 ④항 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제22조 ①항 및 ②항과 제27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별지 1

외국 국적자 선수 등록시 제출 서류

① U12·U15·U18

- 선수의 여권 사본
- 선수의 출생증명서
- 선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본
- 부모의 여권 사본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사본
- 부모의 재직 증명서
- 선수의 재학증명서
- 선수 및 부모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선수의 국제이적확인서 (축구선수로서 첫 등록 및 만 10세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제47조 참조)

② 대학

- 여권
- 외국인 등록증(비자 D-2)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비자D-2) 사본
- 재학증명서
- 국제이적확인서

③ OVER 19 (전문 축구 K리그1, K리그2, K3, K4, WK)

- (사증발급을 위한 서류), 선수이력서, 고용계약서, 외국인선수 보유 현황, 여권사본
- 비자(E-6) 사본
- 외국인등록증(비자 E-6)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비자 E-6) 사본
- 국제이적확인서
- 계약서 원본

별지 2

회원 등록비

① 전문 축구

| 구분 | | 팀 | 선수 |
|--------------|-----------------|----------|---------|
| U12(만12세 이하) | | 300,000원 | 10,000원 |
| U15(만15세 이하) | | | |
| U18(만18세 이하) | | | |
| 성인 | K리그1, K리그2 (프로) | 400,000원 | |
| | K3리그 | | |
| | K4리그 | | |
| | WK리그 | | |
| | 대학 | | |

② 동호인 축구

| 구분 | | 팀 | 선수 |
|-------------|--|-----------------|---------|
| U12·U15·U18 | | 시군구(시도)협회 기준 | 10,000원 |
| 성인 | | | |

- ① 등록비는 온라인시스템 및 시도협회·시군구협회 등록 업무와 축구보급을 위하여 사용된다.
- ② 납부처는 해당 지역 시도협회이다.
- ③ 등록비는 연1회 납부하며, 전문 축구팀으로 이적 시 이적수수료가 발생한다.
(이적으로 인한 등록, 등급 변경으로 인한 등록 시에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④ 등록비는 환급이 불가하니 오류 및 과오납에 유의해야 한다.

이적수수료

| 구분 | 선수 |
|--------|--------------|
| 전문 축구 | 10,000원 |
| 동호인 축구 | 10,000원 (유예) |

별지 3

등록 절차

① 전문 축구 회원

| | | |
|----------|---|---|
| 전문 축구 회원 | ① | - . joinkfa.com에 본인인증(본인핸드폰, 아이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팀에 등록 신청 및 등록업무 대리위임 등 각종 동의 |
| 팀 | ② | - 등록 사항 입력(등록담당자/임원/지도자) - 등록 사항 입력(선수) 선수정보 업로드(초,중,고,대 재학증명서, 신상정보, 사진 등) - 시도협회 승인 요청 |
| 시·도 협회 | ③ | - 최종 승인 |
| | | - (시·도 체육회 직인 날인) 등록 신청서 보관 |
| 팀 | ④ | -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등록비 입금(팀, 선수) |
| | ⑤ | - 등록 완료 (대회 참가 신청 가능, 등록 신청서 출력 가능) |

② 동호인 축구 회원

| | | |
|-----------|---|--|
| 동호인 축구 회원 | ① | - . joinkfa.com에 본인인증(본인핸드폰, 아이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팀에 등록 신청 및 등록업무 대리위임 등 각종 동의 |
| 팀 | ② | - 등록 사항 입력(등록담당자/임원/지도자) - 등록 사항 입력(선수) 선수정보 업로드 (신상정보, 사진 등) - 시군구협회 승인 요청 |
| 시군구협회 | ③ | - 시군구협회 1차 승인 (등록 정보) |
| 팀 | ④ | ※ ②과정에서 협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시·도 협회 | ⑤ | - 2차 최종 승인 |
| 팀 | ⑥ | - 발급받은 가상 계좌에 등록비 입금(선수) |
| | ⑦ | - 등록 완료 (대회 참가 신청 가능) |

* 팀, 임원, 지도자, 선수 등은 단체장으로부터 대표로 위임받은 등록 담당자를 통하여 등록해야 한다.

* 지도자의 등록과 탈퇴는 연중 가능하고 해당 시도협회의 승인 절차를 따른다.

* 임원의 등록과 탈퇴는 연중 가능하고 해당 팀의 승인 절차만 필요하다.

* K리그1, K리그2(프로) 회원의 등록/이적/탈퇴는 협회와 프로연맹이 정한 별도의 절차를 따른다.

* 신규/이적/유급 선수 등록에 관한 요건,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joinkfa.com의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inkfa.com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별지 4

프로 신인 육성지원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 당해 연도에 등록한 프로 신인 선수의 해당 프로 구단에서 선수가 만 12세부터 만21세까지 등록되어 있던 팀의 축구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프로 신인 선수 육성지원금(이하 육성지원금)과 관련하여 협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3조 (업무 절차)

- ① 협회는 해당 아마추어팀에게 해당 선수와 관련된 육성지원 금액을 통보하고 입금받을 등록된 팀명의 계좌를 제출받은 후 해당 프로구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해당 프로구단은 협회가 정한 기한 내에 해당 계좌로 육성지원금을 납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회에 결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② 프로(K리그) 유스팀의 경우 육성지원금 지급 조항이 명시된 협약을 협회로 제출하여 지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조 (지급시기)

해당 프로팀은 당해연도 등록한 신인 선수가 등록되었던 아마추어팀에 협회가 정한 업무 절차에 따라 정기등록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지급 비율)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산정된 기준에 의거 만 12세부터 만21세까지 등록되어 있던 팀에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

<지급 비율(%)>

- 만 12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 만 13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 만 14세 생일을 맞는 시즌 : 5% (총 연봉 50%의 5%)
- 만 15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 만 16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 만 17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 만 18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0% (총 연봉 50%의 10%)
- 만 19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 만 20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 만 21세 생일을 맞는 시즌 : 15% (총 연봉 50%의 15%)

- ① 시즌중 이적시 'n/12개월'으로 지급 비율을 정하되, 등록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9개월 이상일 경우 1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② 만 21세 이전에 프로 신인으로 입단한 경우 잔여 금액을 해당 등록팀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③ 소속팀이 프로구단 소속 유스팀인 경우 해당 구단과 아마추어팀간 협약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선수의 입단 연도 정기등록 마감을 기준으로 전 소속팀의 미등록 또는 해체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축구기금으로 활용한다.

제6조 (산정 기준)

- ① 자유선발 S급 선수: 2,500만원
- ② 자유선발 일반 및 우선지명 선수 : 1년차 기본급의 50%
 - 단, 자유선발 일반 선수 중 1년 이하 계약의 경우 육성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해당 연도의 K리그2 구단이 선발한 선수의 육성지원금은 위 기준의 50%로 한다.

제7조 (지급불이행에 따른 조치)

해당 프로구단은 육성지원금을 기한내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 이행 시점까지 신규 선수의 등록을 금지한다. 또한 지속적인 불이행 상태이거나 지급 불이행 반복 시 행정상 불이익 및 공정분과위원회에 회부된다.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별지 5

대한축구협회 증명서 발급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승인·파견한 국내·국제대회에 참가한 팀·선수·지도자의 등록 확인과 경기 실적 증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협회에 등록된 팀
- ② 협회에 등록된 선수
- ③ 협회에 등록된 지도자
- ④ 위 ②,③ 항 해당자의 직계 가족 (가족 관계 확인 후 발급)

제3조 (종류)

① 협회 증명서 종류는 아래와 같다.

| 팀 | | |
|---------------------|-----------|---------------|
| 증명서 종류 | 발급 처리 기간 | DB |
| 등록증명서(기본) | 즉시 발급 | - |
| 등록증명서 (소속선수 포함) | 즉시 발급 | - |
| 실적증명서 | 업무일 기준 3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선수 | | |
| 증명서 종류 | 발급 처리 기간 | DB |
| 등록증명서 | 즉시 발급 | - |
| 등록증명서(풋살) | 즉시 발급 | - |
| 경기실적증명서(출전포함) | 즉시 발급 | - |
| 경기실적증명서 (등록/미등록) | 업무일 기준 3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리그실적증명서 | 즉시 발급 | - |
| 대회참가증명서 | 즉시 발급 | - |
| 경력증명서 | 업무일 기준 5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각급대표팀증명서 | 업무일 기준 5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각급대표팀 소집확인서 | 즉시 발급 | - |

| 지도자 | | |
|--------|-----------|---------------|
| 증명서 종류 | 발급 처리 기간 | DB |
| 자격증증명서 | 즉시 발급 | - |
| 경력증명서 | 업무일 기준 5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실적증명서 | 업무일 기준 5일 | 과거기록 + 오입력 확인 |
| 기타 | | |
| 증명서 종류 | 발급 처리 기간 | DB |
| 상무추천서 | 즉시 발급 | - |

② 증명서 발급 비용은 협회 온라인 등록시스템(joinkfa.com) 공시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 (신청 방법 및 발급 절차)

증명서는 Joinkfa.com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처의 승인을 거쳐 발급된다.

제5조 (발급처)

발급처는 협회 대회운영실 등록팀에서 진행하며, 협회 가맹 시도협회 · 연맹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제6조 (발급 기준)

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각 증명서의 세부 내용은 증명서 발급 운영지침에 따른다. 협회는 보관된 기록 및 실적을 근거로 증명서를 발급한다. 미확인된 실적 및 경력은 신청자가 증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시 발급이 불가하다.

- ① 전국 대회 전문축구(초·중·고·대·성인 일반) : KFA 주관 대회
 1. 대회 참가 증명
 2. 대회 실적 증명 : 대회 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 (출전경기수, 출전시간 등)
- ② 리그 전문축구(초·중·고·대) : KFA 주관 리그(초중고 주말리그 및 왕중왕전, U리그)
 1. 리그 참가 증명
 2. 리그 실적 증명 : 리그 출전 기록을 기준으로 발급 (출전경기수, 출전시간 등)

※ 8인제로 운영되는 U-12 대회 및 리그의 증명서에는 플라잉교체로 인하여 출전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각급대표 증명 : 협회가 파견한 국제 대회 각급 대표 실적 또는 소집여부 확인
- ④ 상무 추천서 : 협회 등록 선수로서 상무 지원 대상자

제7조 (변경 요청)

- ① 다음 각 호의 팀, 선수, 지도자는 KFA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실적 등 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협회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1. 선수/지도자 본인
 - 가. 본인 경기기록이 누락된 경우
 - 나. 본인 경기기록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 2. 팀
 - 가. 경기기록 등록 시 오류가 포함된 경우
 - 나. 경기기록 등록 후 경기결과가 변경/조정된 경우
- ② 변경 요청은 해당 시도협회에 신청한다.

제8조 (변경 처리)

- ① 선수가 신청한 변경요청은 해당 시도협회에서 접수하여 신청 내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 확인한다.
 - 1. 신청 내역의 타당성
 - 2. 필요 증빙자료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진술서, 소속팀 공문 등)
- ② 경기실적 변경 요청은 시도협회의 심의를 거쳐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협회는 시도협회가 신청한 변경요청에 대하여 공문, 증빙자료, 변경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 ④ 각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신청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규정에 다루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협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별지 6

U18(고등)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선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U18(고등)선수의 계약 및 성인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으로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국내 축구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프로구단이 운영하는 U18팀(이하 프로산하 U18팀) 소속 선수 중 당해 연도 만17세 도달하는 선수부터 만18세 이하 선수에 적용된다.

제3조(계약 사항)

- ① 선수의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 ② 계약 기간 중 프로구단은 선수에게 소정의 기본급연액을 지급해야 한다.
- ③ 프로연맹은 프로구단과 계약 체결 사실 확인과 함께 해당계약서 및 소속학교장 동의서 등 협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출전 사항)

- ① 선수가 제 3조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1회 이상 협회 및 프로연맹이 주관하는 성인대회 공식경기에 출전한 경우, 협회가 승인한 U18대회에서 프로산하 U18팀 간의 경기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② 선수가 성인대회에 출전한 경우 해당 현황을 출전 이후 10일 이내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일 및 기타)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사회 의결 다음일) 부터 적용되며, 상기 사항의 적용 세칙은 프로연맹이 협회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